

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(위법성검토요원) 모집 안내

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5. 6. 3.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상 선거범죄 예방·단속업무를 지원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(위법성검토요원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채용인원 : 3명 이내
2. 근무기간 : 2025. 4. 29.(화) ~ 2025. 6. 3.(화, 선거일)
3. 근무처 :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(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, 4층)
4. 담당업무 : 수집된 인터넷게시물의 「공직선거법」 위반 여부 검토,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선거범죄 조사·조치 관련 위법성 검토 지원,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답변(안) 작성 등
5. 지원자격
 - 대한민국 국민인 자
 -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
 - 법학전공 학위 소지자·휴학 중인자, 법학전문대학원 졸업(예정)자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
 - ※ 변호사의 경우, 요청 시 「변호사법」 제21조의2에 의한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발급
 -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과 혈연·지연 등 연고관계가 없는 자
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

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○ 가점 사항

구 분		부가 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~10%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%

※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.

또한,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.

단,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

6. 서류접수

가. 제출기간 : 2025. 4. 19.(토) ~ 2025. 4. 23.(수) ※마감일 18:00까지 제출

나. 제출방법 : 전자우편(necseouljido@nec.go.kr)으로 제출

다. 제출서류

제출시기	제출서류			
지원서접수 시	<u>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졸업(휴학)증명서·경력증명서 등, 자격증 등</u>			
	※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처리			
	<table><tr><th>제출대상</th><th>제출서류</th></tr><tr><td>가점 대상자</td><td>① 법정가점 대상자(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) 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※ 가점 비율 필수 기재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(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)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 ※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</td></tr></table>	제출대상	제출서류	가점 대상자
제출대상	제출서류			
가점 대상자	① 법정가점 대상자(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) 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※ 가점 비율 필수 기재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(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)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 ※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			
최종합격자 발표 후 (근로계약 시)	○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 ○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			

7. 선발방법 : 서류심사 후 합격자 대상 개별 면접심사

가. 서류심사 : 2025. 4. 24.(목) (적격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)

※ 심사종료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

※ 합격자 대상 면접시각장소 등 개별 통지(문자 또는 전화)

나. 면접심사 : 2025. 4. 25.(금)

※ 면접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 인원 및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8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5. 4. 28.(월)까지

- ※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, 합격자 대상 개별 통지(문자 또는 전화)
- ※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허위경력, 정당가입사실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
- ※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적격자 중 예비합격자를 선정(최종합격자와 함께 공고)

9. 대우 및 근무조건

가. 수당·실비 : 1일 당 130,860원(식비 포함)

나. 근무시간 : 1일 8시간(09:00~18:00, 상근, 식사시간 1시간 제외), 1주일 5일
근무시 1일 유급휴일

※ 선거상황 및 예방·단속활동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범위(1일 8시간) 내에서 새벽·야간·휴일·주말 근무 또는 오전·오후 교대근무할 수 있음.

※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.

10. 유의사항

가. 채용비리 관련
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33조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
나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응시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

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
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
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* 지참 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
* 기간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, 주민등록증
발급신청 확인서(사진 포함, 유효기간 내)

○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무투표 등으로 감시·단속업무가 소멸되는 경우
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

○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
및 안내 예정

○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(☎02-744-1390)에
문의

2025. 4. 19.

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